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 8. 27.)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 업 소 득 과	1
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환 경 과	8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 경 과	12
4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 설 교 통 과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농업기계 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현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운송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송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나. 운송 지원에 따른 반환 등 정비함(안 제9조·제10조·제11조)
- 다. 임대료 감면대상 정비함(안 제11조·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 2)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2억2300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14. ~ 8.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별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필요

- 농기계 임대 시 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현장까지 배달 서비스 제공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 제3조, 제8조의2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 기간제 6명 채용, 운송차량 5대 구입에 예산 소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군이 농기계 운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편도 15,000원의 운송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와 운송료의 징수·반환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조 문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제9조제1항	임대료에 운송료 포함	임대료와 운송료의 징수체계 명확화
제9조의2	농기계 운송지원 신설	개정안의 핵심사항
제9조의2제1항	군수가 운송지원 가능	
제9조의2제2항	운송지원 기준 규정	운송거리·지역·농기계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9조의2 제4항에서 정할 것으로 판단됨
제9조의2제3항	운송료: 편도 15,000원	운송원가 및 산정근거 확인 필요
제9조의2제4항	세부기준 홈페이지 게재	
제10조	임대료 및 운송료로 변경	운송료 관리근거 마련
제11조	별표 기준으로 정비	
제12조	임대료 및 운송료 반환	
부칙	공포 후 시행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운송지원 적용

-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중심으로 북부권, 수송대권, 동부권, 남부권 등 5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5기종 1,325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경남도 내 농기계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거창군이 가장 임대 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건)

시·군	거창군 ①	합천군 ②	진주시 ③	하동군 ④	김해시 ⑤	고성군 ⑥	창녕군 ⑦	양산시 ⑭
임대실적	15,807	8,660	7,944	7,721	7,572	6,715	6,525	932

- 또한, 우리군 최근 3년간 임대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건, 백만원, 일)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건수	금액	일수	건수	금액	일수	건수	금액	일수
실적	15,807	324	19,997	14,776	303	16,600	13,158	270	16,600

- 농기계는 종류에 따라 차량 운반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 농업 인이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임대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군이 농기계를 임차 농가까지 운송하고 회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하지만, 운송 요금을 정함에 있어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운전인력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는데 편도 15,000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같은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따라 군수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
- 해당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한 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운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
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의 운송수단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단순한 장비 대여가 아닌 농작업 지원서비스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관련법령 발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면적: 1,855㎡(3층 철골) ▶ 용량: 30톤/일 ▶ 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2,639 (26년 위탁비)	(공동수급) (주)넥스트워터 55% 금강엔지니어링 45%	관리인원 19명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사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2)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단, 거창군 신설 소각시설(스토커형) 준공 시 까지

3) 선정방법: 공개모집(선정위원회 평가·선정)

4) 수탁자격: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

- 수탁자의 기술 능력, 재정 상태, 적격성 등을 종합 고려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선정

다. 소요예산: 2,782백만원 정도 (2026년도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1,451백만원 / 변동비: 702백만원 / 제경비: 629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5. 검토의견

○ 이번 동의안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제1호(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시기상 문제는 없음.

- 그간 위탁관리비를 살펴보면 2024년 약 21억 6,500만원에서 2027년 약 27억 8,200만원으로 증가하여 3년만에 약 6억 1,700만원, 28.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순한 물가·인건비 상승 외에 제경비가 3억 6,700만 원에서 6억 2,9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제안된 수탁자격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20톤/일 이상의 열분해가스화 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 참여 가능한 업체가 제한되어 공개모집의 실질적인 경쟁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사업은 단순 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행정·공공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단순 가격 입찰보다는 사업 제안서 평가와 협상 절차를 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여짐.
 - 「지방계약법」 제4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다만,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거창군 소각 시설(스토커형) 개선사업 완전 전까지”로 조건을 두고 있음.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반적인 행정시설과 달리 소각로 운전, 대기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관리, 시설 유지 보수 등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설임.
- 또한, 시설 특성상 24시간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 인력 확보와 교대근무 체계가 필요하므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저촉되지 않았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 탁 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운영
-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6번지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 사업장 지내)
- 다. 위탁사무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시설 운영·관리
 -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 운영
 - 다회용기 세척물품 및 차량 운영
 - 다회용기 및 운영물품 운영

-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세척, 공급 운영 등
- 라. 재위탁기간: 3년(2027. 1. 1. ~ 2029. 12. 31.)
 - 1차계약: 2024. 1. 1. ~ 2026. 12. 31
- 마. 위탁사업자: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말순)
 - 자활근로사업 에코워싱사업단 연계 추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
- 바. 소요예산: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
- 2)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0조
- 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5조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 5) 「자활사업안내(Ⅰ)」 지침
- 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5.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대여·회수 하고 세척하여 다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세척시설 운영과 차량·장비 관리, 위생관리 및 신속한 회수·공급체계가 필요한 업무임.

- 특히, 현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은 어린이집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세척시설 및 다회용기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 후 2024년부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시설과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기존 수행기관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은 단순한 폐기물 감량에 그치지 않고 자활근로 사업인 에코워싱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1회용품 감량 → 다회용기 재사용 → 자원순환 촉진 →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위탁사업)에 대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진입성, 자활기업 창업 전망, 수익금발생, 참여자의 자립 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출안에는 2027년부터의 위탁을 “재위탁”으로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기존 수탁기관인 거창지역자활센터와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는 현행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절차에 맞게 “재계약”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동의안에서 소요예산을 “없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세척장 운영비, 전기·수도·세제 등 세척비용,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근로자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군에서 시설·장비·차량 등을 제공하고 수탁기관이 자활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구조라며, 이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적인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번 동의안은 기존 2024~2026년 사업을 다시 2027~2029년 까지 3년간 계속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확인할 수 없음.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주차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나. 위탁사무

1)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차장명	소 재 지	주차면수	면적(㎡)
소계	2개소	86면	2,481
노상공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일원	36면	528
거점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50면	1,953

2) 유료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 다. 위탁기간: 2026. 11. ~ 2029. 11.
-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입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주차장법」 제8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북부사거리~중앙교 일원의 노상공영주차장 36면과 거창읍 대동리 거점공영주차장 50면 등 2개소, 총 86면의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임.
- 수탁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대상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 보다는 주민의 주차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차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제출된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으나, 86면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 8호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확인할 수 없음.
- 덧붙여, 관리수탁 금액을 연 36,000천원으로 제시한 것은 총 주차요금 수입인지,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인지, 수탁 기관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실제 군의 재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 주차요금 수입과 위탁비용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동의안은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은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